"광복70년" 위대한 여정, 새로운 도약

공정거래위원회

공정거래위원회

수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
(경유)
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

사건번호 : 2014서감3367
사 건 명 : ㈜정우물류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
피조사인 : ㈜정우물류(대표이사 장순열)

1.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위 사건을 심사한 결과, 피조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'법'이라 함)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"심의절차종료"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

- 다 음 -

첫째, 택배배송 중고 화물차량 구입 및 위·수탁 계약 개시 단계에서 피조사인만을 거래상대방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계약 계속 단계에서 동일 영업구역내 일반택배 운송사업자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곤란한 점

둘째, 피조사인이 택배배송 중고 화물차량 구입조건 및 지입 위·수탁 계약조건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, 계약사항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달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

셋째, 피조사인에게 택배배송 중고 화물차량 이전비용과 매월 관리비를 지급한 것이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화물차량 구입조건 및 지입 위·수탁 관리계약 조건을 이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

넷째, 피조사인이 우체국 택배 배송용역의 수탁 대가로 지입료 등을 받는 것이 통상적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의견과 피조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면허 사용을 강요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

3. 기타 위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이득훈 조사관(☎ 044-200-4506)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공정거래위원회

조사관 이득훈 서비스업감시과 전결 2016. 1. 26.
협조자 과 과장 정창욱

시행 서비스업감시과-95 (2016. 1. 26.) 접수

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, (어진동, 공정거래위원회) / www.ftc.go.kr

전화번호 044-200-4506 팩스번호 044-200-4529 / ldk1015@korea.kr / 비공개(6,7)

"대한민국!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, - 3회 연속 -"